|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소비세 관련 정책 문제 보충규정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 50호《국가세무총국의 소비세 관련 정책 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 47호) 관련 문제 보충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세무총국이 2012년 제 47호 제 1조 및 제 2조에서 말한 ‘기타 원자재’란 원유 이외의 정제유의 생산 가공에 사용되는 각종 원료를 말한다. 2. 납세인이 생산∙가공한 제품이 국가세무총국이 공고한 2012년 제 47호 제 1조 제 (1)항 규정에 부합한 경우, 어떤 명칭으로 대외 판매하거나 소비세과세대상제품의 비연속적 생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규정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3. 국가세무총국이 공고한 2012년 제 47호 제 1조 제 (2)항에서 일컫는 ‘이 조 제 (1) 항 규정 이외의 제품이란, 제품명칭이 정제유소비세 세목에서 나열한 범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외관형태가 과세대상정제유와 서로 같거나 비슷하며 주요원료가 과세대상정제유의 생산가공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전 관(款)에서 일컫는 제품에는 아래의 제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1) 환경보호부가 발표한《중국 현대화학 물질명록 》에서 나열한 분자식의 제품 및 납세인이 취득한 환경보호부 발급의《신(新)화학물질환경관리등기증》에서 나열한 제품명. (2) 납세인이 취득한 성급(포함) 이상 품질기술감독부문에서 발급한《전국공업제품생산허가증》중에서 제품명칭이 ‘석유제품’이외의 명세제품인 경우이 조 제 1항에서 규정한 제품이 국가기준, 산업기준 또는 기타 방식에 근거하여 소비세과세대상제품에 속하는 경우, 이 공고 제 2조 규정을 적용한다. 4. 국가세무총국이 공고한 2012년 제 47호 제 2조에서 일컫는 ‘납세인이 원유 또는 기타 원료로 생산가공한 제품’이란, 상온상압(常温常压) 상태에서 어두운 갈색 또는 검은색을 띄는 액체 또는 반고체 제품을 말한다. 기타 액체상태를 보이는 제품이 아스팔트 명칭으로 대외판매되거나 비연속생산 소비세과세대상제품에 사용된 경우, 국가세무총국이 공고한 2012년 제 47호 제 1조 및 이 공고 제 3조 규정을 적용한다. 아스팔트제품의 산업기준에는 석유화학공업 및 교통, 건축, 전력 등 산업에서 적용한 산업성 기준이 포함된다. 5. 국가세무총국이 공고한 2012년 제 47호에서 일컫는 ‘관련제품 품질검사증명’이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또는 성급 품질기술감독부문에 의해 법에 따라 실험실 자질 인증을 갖춘 검측기구에서 발급한 관련제품이 국가 또는 산업기준에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검측증명을 말한다. 동 검측기구의 관련제품에 대한 검측능력은 그 자질인증서 별표에서 규정한 범위 내여야 한다. 납세인이 검측기구에 관련제품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항목은 당해 제품의 국가 또는 산업 기준에서 명시한 전체 항목이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에 검측증명을 제출하고 등록 할 경우, 반드시 검측을 위탁받은 제품이 국가 또는 산업 기준에 부합하고, 검측기구가 검측자질 및 당해 제품 검측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질인증서 및 검측능력 부표 복사본 등이 이에 포함된다. 본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이하 ‘성시’) 범위 내의 검측기구가 관련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인은 기타 성시의 조건에 부합하는 검측기구에 제품에 대한 검사진행을 위탁할 수 있으며, 전 관 규정에 따라 제품점검증명 및 검측기구 자질능력증명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6. 국가세무총국이 공고한 2012년 제 47호 및 이 공고 규정에 의해 점검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거나 이미 점검증명을 제출하여 소비세를 납입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 세무기관은 필요에 의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납세인이 실제 생산가공한 제품이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7. 납세인은 하기 상황 중 하나의 상황에 포함되며, 소비세를 미납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세금을 추가 징수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반드시 제공해야 하지만 미제공한 검사증명 (2) 검사증명을 제공했으나, 실제 생산가공한 제품이 검사증명에서 의거한 국가 또는 산업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8. 아래에 열거한 제품이 규정에 따라 소비세 미납세액 중 그 원료의 기 납부한 소비세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원재료에 포함된 소비세 퇴세 정책을 적용받는 제품은 제외된다. (1) 국가세무총국이 공고한 2012년 제 47호 및 이 공고에 따라 나프타, 연료유는 소비세납세 제품으로 간주된 경우 (2) 외부에서 구매 또는 위탁가공 회수한 이 조 제 (1)항 규정 제품으로 원료를 생산한 과세대상소비품 (3) 국가세무총국이 공고한 2012년 제 47호 제 3조 제 (2) 항에서 규정한 소비세 납세 제품인 경우 9. 이 공고 제 8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제품에 대해 납세인이 생산, 판매, 또는 위탁가공한 경우, 구매자 또는 위탁자가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품명을 발급한 후 ‘나프타(또는 연료유)’ 또는 ‘나프타(또는 연료유) 가공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구매자 또는 위탁자가 당해 제품으로 원료를 생산한 과세대상소비품은 상술한 증명에 의거하여 규정에 따라 원료기납소비세 세액 공제를 해야 한다. 10. 각 지역 세무기관은 소비세의 일상관리와 납세평가를 강화하고, 납세인이 서로 다른 명칭의 제품 판매량에 대한 이상변동현황을 철저하게 감독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나프타, 연료유로 간주되는 소비세징수 제품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11. 이 공고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실행한다. 이 공고의 실행 전, 납세인은 주관세무기관에 제품 검증증명을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모든 검증항목이 당해 제품의 국가 또는 산업 기준에서 명시한 전체 항목인 경우, 조정할 필요가 없으나, 일부항목만 검증한 경우, 기타 항목에 대한 검증증명을 추가로 제공해야 하며, 전체항목에 대한 검증증명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당해 제품은 국가 또는 산업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납세소비세 제품은 이 공고 규정에 따라 소비세징수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납세인은 규정에 따라 퇴세 또는 공제신청 후, 소비세를 납입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3년 9월 9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消费税有关政策问题补充规定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50号　　现对《国家税务总局关于消费税有关政策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47号）有关问题补充规定如下：　　一、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47号第一条和第二条所称“其他原料”是指除原油以外可用于生产加工成品油的各种原料。　　二、纳税人生产加工符合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47号第一条第（一）项规定的产品，无论以何种名称对外销售或用于非连续生产应征消费税产品，均应按规定缴纳消费税。　　三、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47号第一条第（二）项所称“本条第（一）项规定以外的产品”是指产品名称虽不属于成品油消费税税目列举的范围，但外观形态与应税成品油相同或相近，且主要原料可用于生产加工应税成品油的产品。　　前款所称产品不包括：　　（一）环境保护部发布《中国现有化学物质名录》中列明分子式的产品和纳税人取得环境保护部颁发的《新化学物质环境管理登记证》中列名的产品；　　（二）纳税人取得省级（含）以上质量技术监督部门颁发的《全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中除产品名称注明为“石油产品”外的各明细产品。　　本条第一款规定的产品，如根据国家标准、行业标准或其他方法可以确认属于应征消费税的产品，适用本公告第二条规定。　　四、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47号第二条所称“纳税人以原油或其他原料生产加工的产品”是指常温常压状态下呈暗褐色或黑色的液态或半固态产品。　　其他呈液态状产品以沥青名称对外销售或用于非连续生产应征消费税产品，适用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47号第一条和本公告第三条规定。　　沥青产品的行业标准，包括石油化工以及交通、建筑、电力等行业适用的行业性标准。　　五、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47号所称“相关产品质量检验证明”是指经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或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依法授予实验室资质认定的检测机构出具的相关产品达到国家或行业标准的检验证明，且该检测机构对相关产品的检测能力在其资质认定证书附表规定的范围之内。　　纳税人委托检测机构对相关产品进行检验的项目应为该产品国家或行业标准中列明的全部项目。在向主管税务机关提交检验证明备案时，应一并提供受检产品的国家或行业标准以及检测机构具备检测资质和该产品检测能力的证明材料，包括资质认定证书及检测能力附表复印件等。　　本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以下简称省市）范围内的检测机构对相关产品不能检验的，纳税人可委托其他省市符合条件的检测机构对产品进行检验，并按前款规定提供产品检验证明和检测机构资质能力证明等材料。　　六、对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47号和本公告规定可不提供检验证明或已提供检验证明而不缴纳消费税的产品，税务机关可根据需要组织进行抽检，核实纳税人实际生产加工的产品是否符合不征收消费税的规定。　　七、纳税人发生下列情形之一且未缴纳消费税的，主管税务机关应依法补征税款并予以相应处理：　　（一）应提供而未提供检验证明；　　（二）虽提供检验证明，但实际生产加工的产品不符合检验证明所依据的国家或行业标准。　　八、下列产品准予按规定从消费税应纳税额中扣除其原料已纳的消费税税款，但可享受原料所含消费税退税政策的产品除外：　　（一）按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47号和本公告规定视同石脑油、燃料油缴纳消费税的产品；　　（二）以外购或委托加工收回本条第（一）项规定的产品为原料生产的应税消费品；　　（三）按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47号第三条第（二）项规定缴纳消费税的产品。　　九、纳税人生产、销售或受托加工本公告第八条第（一）项规定的产品，应在向购货方或委托方开具的增值税专用发票品名后注明“视同石脑油（或燃料油）”或“视同石脑油（或燃料油）加工”。购货方或委托方以该产品为原料生产应税消费品，需凭上述凭证按规定办理原料已纳消费税税款的扣除手续。　　十、各地税务机关应加强消费税的日常管理和纳税评估，加大对纳税人不同名称产品销量异常变动情况的监管，并可根据需要对视同石脑油、燃料油征收消费税的产品，制定具体管理办法。　　十一、本公告自2013年1月1日起施行。本公告施行前，纳税人向主管税务机关提交备案的产品检验证明，如所检项目为该产品国家或行业标准中列明的全部项目，可不做调整，如所检项目仅为部分项目，需补充提供其他项目的检验证明备案，对不提供全部项目检验证明的，视同不符合该产品的国家或行业标准；对已缴纳消费税的产品，根据本公告规定不属于消费税征税范围的，纳税人可按规定申请退税或抵减以后期间的应纳消费税。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3年9月9日 |